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80
결재일자	201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김선형	성기창	민지선	01/07 박형중		
협 조					

## 2016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2016. 1.

교육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2016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관내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I 추진개요

### □ 관련근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 □ 추진방향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 사업비 지원을 통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 □ 보훈단체 현황

구 분	단 체 명	대 표 자	보훈처등록유공자 수 (보훈회관등록회원 수)	소 재 지
국가유공자 단 체	광복회	이광종	87(87)	성북구 보훈회관
	상이군경회	양승훈	875(965)	
	전몰군경유족회	안상필	452(452)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정순	427(427)	
	대한무공수훈자회	이석중	901(250)	
개 별 법 령 규 정 단 체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정환	36(85)	
	고엽제 전우회	송성용	1,520(475)	
	6.25참전유공자회	이영우	1,246(424)	
참전유공자 단 체	월남참전전우회	전산용	1,958(360)	별도소재 사무실
계			7,502(3,525)	

## II 추진경과

###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광복회	상 이 군경회	전물군경 유족회	전물군경 미망인회	무 공 수훈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 전우회
2014년 지원액	81,000	5,000	12,000	12,000	12,000	12,000	5,000	8,000	8,000	7,000
2015년 지원액	90,000	6,800	12,000	12,000	12,000	12,000	6,800	9,800	9,800	8,800
2016년 지원액	99,000	9,000	12,000	12,000	12,000	12,000	9,000	11,000	11,000	11,000
인상분	9,000 ↑	2,200 ↑	-	-	-	-	2,200 ↑	1,200 ↑	1,200 ↑	2,200 ↑

### □ 변경내역

구 분	2012년도 이전	2013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부서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통계목	사회단체보조금 (307-03)	사회단체보조금 (307-03)	사회복지보조 (307-10)
지원범위	·사업비 지원이 원칙 ·제한적인 운영비 지원 ·자본적 경비 제외	·사업비 지원이 원칙 ·제한적인 운영비 지원 ·자본적 경비 제외	·자본적 경비 제외 ·운영비지원 가능
사업공모실시	○	○	X
위원회 심의	○	○	X

## III 추진계획

□ 지원기간 : 2016. 1월~ 12월

### □ 지원사업

- 기존 사회단체 지원 사업 (안보의식강화 운동, 보훈의 달 행사 등)
- 국가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선양사업 및 회원관리 지원

## □ 2016년 지원계획

○ 지원액 : 99,000천원 (9개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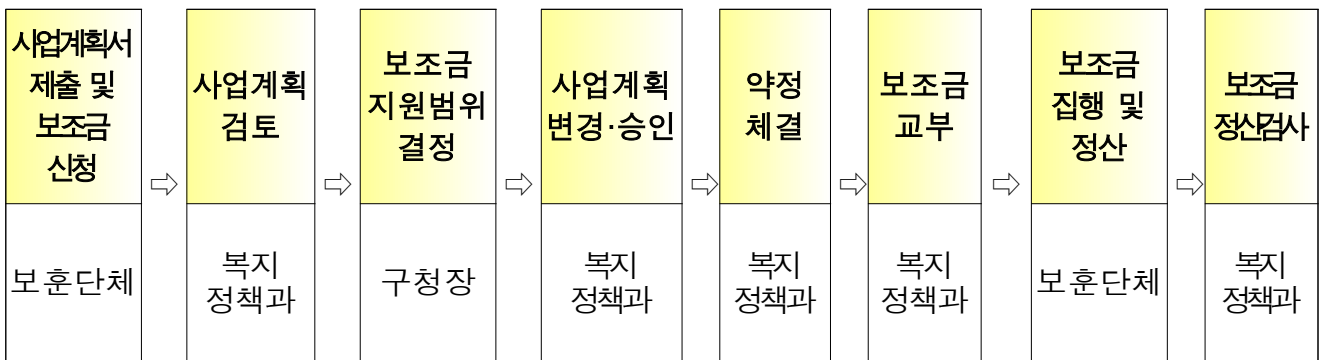
○ 단체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광복회	상 이 군경회	전물군경 유족회	전물군경 미망인회	무 공 수훈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 전우회
2016년 지원액	99,000	9,000	12,000	12,000	12,000	12,000	9,000	11,000	11,000	11,000

## III 세 부 추 진 계 획

### □ 지원절차



○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 2016년 단체별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체소개서 (정관 또는 회칙 첨부), 단체회원 명단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2016. 1월, 7월 (연2회 상·하반기 분할지급)
- 교부조건

-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보조금 지원 약정에 의거 당초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 금지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단체별 정산서류를 징구

- 정산서류

- 보조금정산서,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서,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사진 등

붙임 : 1.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근거 1부.

2. 보조금 신청서 서식 1부.

3. 사업계획서 서식 1부. 끝.